



상해 푸르 실업유한공사 VS 황즈위, 상해 싸피아 섬유유한공사 상업비밀침해 분쟁 사건

34

01 서지 사항

국가 법원	중국 최고인민법원	사건번호	(2011)民申字第122号
판결 일자	2011. 7. 27.	판결 결과	재심신청 기각 (권리자 패)
원심원고 (2심상소인, 신청재심인)	상해 푸르 실업유한공사		
원심피고 (2심 피상소인, 피신청인)	1. 황즈위, 2. 상해 싸피아 섬유유한공사		
참조 법령	중화인민공화국 부정당경쟁법 제10조, 민사소송법 제179조, 181조, 최고인민법원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약간의 규정 제35조, 최고인민법원 부정당경쟁 민사사건심리 법률응용에 관한 약간의 문제해석 제13조		
영업비밀	고객명단		
키워드 (Keyword)	고객명단(客户名单), 특수한 고객정보(客户特殊信息), 경쟁금지(竞业限制), 상업비밀보호조치(商业秘密保密措施), 소송요청 변경(变更诉讼请求)		

02 사건 개요

황즈위가 1996년 인민폐 40만 위엔을 투자하여 상해 푸르 실업유한공사(이하 '푸르공사')를 설립하고 지분 40%를 보유하였으며, 공사의 경영범위는 옷, 섬유제품의 가공제조, 판매 등이었다. 황즈위는 푸르공사에서 감사 및 부총경리의 직무를 수행하였으나, 2002년 4월 30일 푸르공사 주주총회 결정에 의해 공사에서 퇴출되었고, 이에 황즈위는 지분 투자하여 상해 싸피아 섬유유한공사(이하 '싸피아공사')를 설립하였다.

푸르공사는 황즈위가 재직하였던 2000년 초부터 사건 외 일본공사 선린주식공사와 교역을 시작하였고, 해당 업무를 황즈위가 담당하였다. 황즈위가 푸르공사에서 퇴출된 후, 싸피아공사를 설립하여 일본공사 선린주식공사와 교역을 하였다. 이에 푸르공사는 황즈위와 싸피아 공사를 상대로 상업비밀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 2심법원 모두 ‘일본 선린주식공사’라는 특정고객을 푸르공사의 상업비밀로 보기 어렵고, 푸르공사가 상업비밀보호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푸르공사는 최고인민법원에 재심신청을 한 것이다.

03 주요 쟁점

원심 원고 (2심 상소인 겸 신청재심인)	⇔	원심 피고 (재심 피항소인 겸 재심피신청인)
푸르공사와 황즈위 간의 노동계약서 제11조 제1관 규정이 상업비밀 보호조치에 해당한다.		노동계약서 제11조 제1관은 경업금지 조항일 뿐, 그 자체로 상업비밀 보호조치를 취한 것은 아니다.
2심 법원이 <최고인민법원 민사소송증거 관련 약간의 규정> 제35조를 위반하였다.		<최고인민법원 민사소송증거 관련 약간의 규정> 제35조를 위반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04 판결 요지

노동계약 제11조 제1관은: “을(황즈위)은 갑(푸르공사)과의 계약을 해지한 후 5년 안에, 계약해지 전 갑과 거래하는 고객(공사 혹은 개인)과 어떠한 형식의 비즈니스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을은 갑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최고인민법원은 위 규정의 성격을 경업제한 약정으로 보았다.

중국법은 경업제한 약정을 인정하며, 그 목적은 고용업체의 상업비밀 및 기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경업제한 약정과 비밀보호 협약은 성질이 다르다. 전자는 특정한 인물이 경쟁업종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고, 후자는 상업비밀의 보호를 요구하는 것이다. 단순한 경업제한 약정이 설령 상업비밀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더라도, 해당 규정은 고용업체가 비밀을 보호하고자 하는 주관적 희망사항과 상업비밀로 보호해야 할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경업제한 약정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반부정당경쟁법’ 제10조의 비밀보호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당사자가 주장한 법률관계의 성질 혹은 민사행위의 효력과 인민법원이 사실을 토대로 결정한 부분에 불일치한 상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2심 법원이 <최고인민법원 민사소송증거에 관한 약간의 규정> 제35조에 위반하였다는 재심 신청 이유는 성립하지 않는다.

05 Key Point

중국 인민법원은 기본적으로 '경업제한' 사건을 노동사건으로 분류하고, '상업비밀침해' 사건을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 사건으로 분류하여 구분하고 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경업제한' 약정을 하였다는 자체만으로, 상업비밀침해를 주장하기 위한 '비밀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함' 요건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위 판결은 계속 지지될 것으로 보인다.

하급심에서, 푸르공사의 고객이었던 '일본 선린주식공사'를 장기간 안정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한 특정고객으로 이에 대한 고객정보가 푸르공사의 상업비밀이 되는지가 쟁점이 되었는데, 법원은 장기간 안정적인 거래관계를 가졌다는 자체만으로 상업비밀로 보호받는 '특정 고객 정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특정고객과 다른 정보가 공개된 고객과 비교하여 뭔가 다른 특수한 내용의 고객 정보가 있는지 한 단계 더 조사하여 '상업비밀'로 보호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